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이준배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의해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 제1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고 “규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 제2조 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 같은조 제4항 중

“의회 의장”를 “의회의장”으로

▶ 제5조 제2항 중

“공인의 인영”를 “공인의 인영(印影)”으로

▶ 제12조 중

“허위”를 “거짓”으로

▶ 별표 중

“정리관”을 “재무관”으로

▶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박은미, 최종성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 제3조 제1항 중

“의회 의장” 을 “의회의장” 으로

▶ 제4조 제3항 중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를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박은미, 김영발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활동비 지원한도 상향과 6월 중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충실하고 원활한 연구활동 도모를 위한 개정안으로

▶ 제10조 제1항 중

“단, 지방선거 실시년도는 중간보고를 생략한다.”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박은미, 김영발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시행규칙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등을 조례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한선미, 박은미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와 발언의 신청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나 현재 규칙으로 발언시간과 발언횟수가 적정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로 “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유증진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매체 활용 등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현실 업무에 맞게
개정하여 회의록 발간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영 발